

의안번호	제339호
의결연월일	2021. 5. 10.

-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5. 3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5. 10.

제269회 예산군의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재무과장 : 복 준 수]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며,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(2020. 7. 1)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사권이 제한(개발행위 제한 등)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(안 제2조)

- 상위법 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 또는 변경
 - 2021년부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제2호에 종교 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경감률 직접 명시(안 제3조)
 -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근거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(안 제6조)
- 일몰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(안 제8조의2)
- 서민생활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감면기한 연장
 - 문화재에 대한 감면(안 제4조)
 -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(안 제5조)
 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(안 제7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박 우 현]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며, 2020. 7. 1.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사권이 제한(개발행위 제한 등)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의 내용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없 음

5. 토 론 요 지

없 음

6. 심 사 결 과

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